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 안내 - 관세조사 기간 및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등 -

관세청에서는 ‘23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 지침 정비 및 훈령 반영,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업무효율화 등 심사실무자들의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과 관련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입안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23년 국정감사 ·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법령 개정, 지침 정비 및 훈령 반영, 심사실무자 개정 수요 등을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 1. 관세조사 정의 신설(관세법 제2조) 등 법 적용어로의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로 훈령 내용의 명료화**
 - ‘기업심사’를 법 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
 - 정의 조항에 근거 법령 조항 명시(제2조)
- 2.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제5조~제5-1조)**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조제5항, 제12조제16항)에 따라 기업심사과와 세관 심사부서의 역할 구체·명료화
 - 고액·불복 예상건 등 본청의 지휘·감독 강화로 과세품질 제고
- 3. ‘23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 반영**
 - (감사원) 관세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자료 제출 요청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제36조)
 - (국정감사)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체납방지 조치 조항 신설(제53조의2)

현행	개정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제36조(관세조사의 중지 및 재개)
① ~ ④ (생략)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관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 과세자료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세조사 중지 전에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조사대상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정비

- 특수관계 사전심사 승인업체의 관세조사 절차 반영(제28조의 2)
-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및 처분검토회의의 구성·운영절차·결과통보 등 관련 조항 훈령 반영 (신설, 제43조의2, 제50조~제52조)
-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수집한 정보 포함(제53조)

5.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의 관할세관 정비(제5조)
-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정립 (제28조의2~제28조의 3)

6. 업무효율화 등 실무자들의 개정 수요 반영

- 실제 관세조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기간 연장(제12조)

현행	개정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제12조(관세조사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 기간을 90일(재조사의 경우 60일로 한다) 이내로 결정하되, 필요시 12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방문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조사 기간을 90일(재조사의 경우 60일로 한다) 이내로 결정하되, 필요시 12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

<p>② <신 설></p> <p>③ ~ ⑥ (생략)</p>	<p>② (기존 ② → ③ 으로 변경) <u>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 4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중소기업의 경우 방문조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u></p> <p>③ ~ ⑥ (생략)</p>
--	--

-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사유 추가(제29조, 제36조)
- ¹⁾별표 제1호, ²⁾별지 제9호, ³⁾제21호, ⁴⁾제25호, ⁵⁾제29호 서식 개정
 - 1)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중 업체현황에 따라 필요 자료만 선별 요청 및 품목분류 관련 준비자료 추가
 - 2) “관세조사 대리인 위임장”을 1인 1부 작성서식 외의 다수용 위임장 서식 마련
 - 3) “처분검토회의 회부서” 양식을 결과보고서 양식과 일치시켜 업무효율 도모
 - 4) “결과보고서”에 대리관세사 표기토록 변경
 - 5) “심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제출기한 60일은 동일자료 시 합산 계산 명기(소송 결과)

7. 보안·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 정비(제18조)

III. 시행일자

- 2024. 1. 00.

IV.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 담당자 : 문아영 사무관(TEL. 042-481-7656)
- 제출기한 : 2023. 12. 21.
- 제출방법 :
 - 1) E-mail : ahyoung101@korea.kr
 - 2) Fax : 042-481-7989
 - 3) 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첨부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 [붙임2]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규조문대비표
- [붙임3]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전문
- [붙임4]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Contact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노규현 관세사

T 070-4353-6972
E ghnoh@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